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촉진구역사업계획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4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섬발전촉진구역 사업계획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5.

다. 회 부 일 : 2024.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 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4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섬발전촉진구역 사업계획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섬발전촉진구역 사업계획서에 다른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²⁾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1442호)에 따라 섬발전촉진구역 사업계획서(이하 ‘촉진구역 사업계획서’)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1442호)에 따르면 ‘섬발전촉진구역’이란 지정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교육·문화·여가 등 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섬의 전부 또는 일부구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이때 ‘지정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촉진구역사업계획서상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발전촉진구역의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둘째, 「섬 발전 촉진법」은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의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 조성, 예산 계상, 세제 지원 등을 이미 규정³⁾하고 있으며 섬발전촉진구역으로 지정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정될 수 있음. 따라서 지정섬의 개발을 위한 예산·세제 지원 등이 섬발전촉진구역 내 사업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 신설에 따라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 및 특례 신설이 예산이나 세제 지원보다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1442)은 국유재산특례의 대상을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섬발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례 대상 사업도 촉진구역사업계획서 상 사업으로 규정되어 그 범위

3) 「섬 발전 촉진법」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성과 구체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⁴⁾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_2201442)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특례 대상 및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섬 발전 촉진법」에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섬발전촉진구역은 지자체가 개발 및 운영하는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사무인 바,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유상사용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01442호)

제13조의9(국유·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 신 설 >	연번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219	「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의9	사용료등의 감면	2035. 12. 31.

문의처

02)6788-5150